미리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어느덧 연말정산을 생각해야 하는 때가 찾아왔다. 만 1년이 되어가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연말정산도 예년과는 달리 바뀐 부분들이 있다. 미리 확인해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도록 하자.

글 편집실 **자료** 카드고릴라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3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2배가 적용되며,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한시적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한시적으로 구간별 30만 원씩 상향됐다. 기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까지, 1억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각각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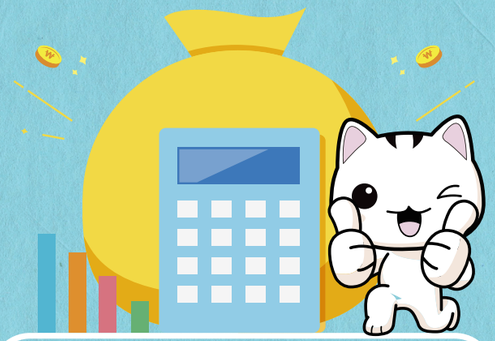

3. 달라지는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이던 한도가 각각 600만 원, 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경력단절여성 요건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 사유가 추가되었다. 경력단절기간 또한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까지로 확대되었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복귀 시 소득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4. 과세제외 관련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매·임차 관련 이익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구매, 임차 관련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5. 비과세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만 대상이었던 데에서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